

검 토 의 견 서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750)

- 이소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50호,
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의회 공무원의
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겸직에 대해
엄격한 심사를 하고,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하는
것입니다.
- 소속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 전념 및 투명하고 청렴한
공직기강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,
-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,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